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화성동탄2지구 A51-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사 장소(주소)	경기도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A51-1 블록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 도시철도( )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해당사항없음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지하2층 : 헬룸#2, 헬룸#3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해당사항없음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2년 07월 26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주) 현대건설	윤영준
대리인	주식회사 영광기술 단	최광기 (인동의를함)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 상세 협의 결과

##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해당사항없음

##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지하2층 : 현룸#2, 현룸#3

## 3. 기타 협의사항

-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건축주등\*이 필수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신청내역서의 "착공통보" 창에 등록)
  - 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 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
  - ③ 착공예정일
  - ④ 준공예정일
  - ⑤ 공사요청일
  - ⑥ 공사현장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건축주등 : 건축주 외 건축사, 건설사, 통신설계사, 시행사,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  
※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최소5개월 소요)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건설사)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